

고령화 관련 해외 신탁 사례조사 및 신탁형 주택연금의 역할

백인걸 부연구위원

최경진, 고제헌 연구위원

최지혜 대리



목 차

I. 논의배경	2
II. 해외 고령화 관련 신탁 활용사례	4
1. 미국	4
2. 영국	8
3. 일본	10
4. 기타	16
III. 신탁형 주택연금	17
1. 신탁의 정의 및 분류	17
2. 신탁형 주택연금의 구조	19
3. 신탁형 주택연금의 역할	20
IV. 결론 및 시사점	23
부 록	27
참 고 문 헌	34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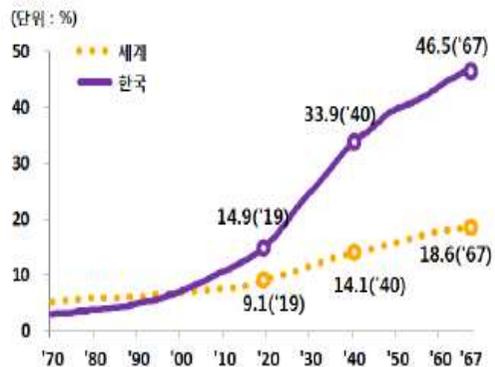
- 주택연금은 공적연금과 더불어 고령층 노후소득 및 거주권을 보장하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현 근저당권방식은 상속분쟁 시 배우자의 수급권이 저해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고령층 자산 운용 및 상속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은 신탁방식의 장점을 주택연금에 적용하기 위해, 미국·영국·일본의 고령층 신탁 활용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영미권 신탁은 정형화된 구조를 갖기보다, 개개인의 필요에 맞도록 계약을 설정하는 유연한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유산상속에 따르는 복잡한 검인절차의 생략과 상속세 절감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일본은 정책적으로 신탁을 통해 고령화 문제와 경기부진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통한 증여방식을 장려하고 있음. 신탁 시장의 발달로 역모기지의 경우도 신탁형을 일찍부터 도입
-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유연성이 큰 구조임. 홍콩 역모기지는 3인까지 공동가입자 허용, 싱가포르는 공동주택 임대권을 매각하여 국민연금 계좌에 연동시킬 때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신탁형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익권을 담보로 월지급금 및 거주권을 보장함. 이에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급권과 거주권 승계가 용이하며, 유희공간에 대한 임대가능 및 주택처분절차가 유연함과 동시에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음
- 향후 신탁형 주택연금에는 이혼·재혼에 따른 수익권의 구체화된 상속구조설계 / 지분매각 방식을 통한 거주권 확보 / 노노(老老)가구*를 고려한 상품설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노노(老老)가구: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령층에 편입된 가구

I. 논의배경

- 한국 유소년인구대비 고령인구 비율은 114%(18년 기준)로 30년 전 19%에서 급증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이행속도를 보임
 - 총인구 중 65세 이상 구성비는 2018년 14.8%에서 2067년 46.5% 수준까지 증가가 예상되며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는 요소임
 - (개인) 기대여명이 연장됨에 따라 은퇴 후 노후생활비 부족으로 노후 빈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사회)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은 자녀 등에 의한 가족부양에 집중되는 구조였으나, 점진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의한 공적부양 또는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경제) 생산가능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층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소비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대신 고령층을 주요고객으로 하는 의료·복지사업의 규모는 확대될 것임

[그림 1] 연령별 인구구성비율 및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연령별 인구구성비율 추이) (고령인구 구성비)



*자료: 통계청

■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노후소득 마련 및 거주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택연금 활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연금) 주택자산을 통해 안정적 노후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은퇴자의 노후생활안정 및 정부의 간접 노후복지수단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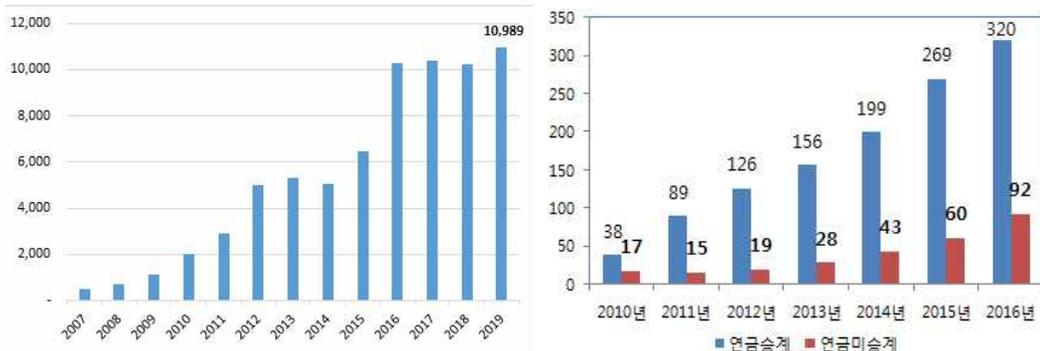
백인걸 · 최경진(2020)

- (소득대체율)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 수준으로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 대비 39%p 높은 바, 고령층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큼
- (한계소비성향)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주택연금이 0.96으로, 공적연금 0.76과 일반가구의 근로사업소득 한계소비성향인 0.61보다 높은 소비진작효과를 보여줌

- (자산관리) 주택연금을 통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인 주택을 유동성이 높은 현금으로 변환함에 따라 보다 높고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이 가능해짐

■ 현재 근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은 경제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 대한 월지급금 및 거주권 승계 문제와 가입주택의 유희부지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그림 2] 주택연금 가입자 추이 및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승계현황
(주택연금 가입자 추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승계현황(부부가입자 기준))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현행 주택연금 계약은 가입자 사망 후 상속분쟁으로 인해 6개월 이내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월지급금의 지급이 정지됨
- 또한 실질적으로 유희공간에 대한 임대차가 사실상 어려워 고령층의 추가적인 소득원 마련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임
 - 반면, 주택연금보다 먼저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출범한 공·사적연금은 수급자 사망 또는 이혼 시 배우자 연금수급권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종합자산관리 기능으로서 신탁이 주목받고 있으며 주택연금 제도에도 신탁방식을 접목할 경우, 상기 언급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음**
 - 신탁은 안전한 재산 보존기능뿐만 아니라 저금리·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정부에서도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수탁재산 범위를 금전·부동산·담보권 등으로 넓힘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신탁업법 제정까지 검토 중임
- **이에 미국·영국·일본을 중심으로 고령화 관련 신탁 활용 사례 및 신탁형 주택연금의 구조 및 특성을 먼저 알아본 후, 사례를 참고로 향후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II. 해외 고령화 관련 신탁 활용사례

- **향후 신탁형 주택연금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유산상속의 효율적 수단으로써 신탁 활용의 역사가 깊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고령화와 함께 신탁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의 신탁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1. 미국

- **미국 고령층의 경우 신탁을 통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수익에 대한 배분을 본인(생존기간), 배우자 및 자녀(사후) 등으로 다양하게 지정함에 따라 생전수익 지속 및 사후 재산 배분에 관한 재무결정을 하고 있음**

- 일반적 유언상속의 경우 분배에 따르는 여러 법적제약이 있는 반면, 신탁을 활용한 상속은 분배를 하는 사람의 의무와 분배의 정도를 유동적으로 설정이 가능하여 유산계획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의 유산계획에서 활용되는 신탁은 검인과정의 생략, 세금회피 및 사생활 보호를 주목적으로 함
 - (검인과정) 일반적인 유산상속과정에서 법원에 의한 검인과정은 필수적임. 검인과정은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며, 이 기간 동안 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함. 또한 검인과정에 의한 법적 대리인 그리고 법원비용으로 인해 최대 유산가치의 5%까지 지불할 수도 있음
 - (세금회피) 일반적으로 신탁에 대해 미국 연방 재산세가 부과됨. 하지만 부부의 경우 공식 조항으로 신탁을 설정함으로써, 재산세 면제 금액을 두 배로 증액시킬 수 있음
 - (사생활보호) 검인절차를 통한 법적과정 중에 공공에 드러날 수 있는 사적 정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그림 3] 유언검인(Probate) 절차



- 상속 신탁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설정된 재산에 대해 설정·관리되는 생전신탁(Living trust 혹은 Inter vivos trust)과 유언에 신탁조항을 포함시킨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으로 구분됨
- (생전신탁) 위탁자가 생전에 설정하는 유산계획의 신탁관계. 신탁설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수익자를 생전 혹은 사후에 한정할 수 있음
 - 미국법의 경우 생전신탁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기에 법적인 검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원하는 시점에 유동적으로 유산을 증여할 수 있음

- 생전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생존기간 동안 본인을 수탁자로 지정하여 생존기간 동안 해당 자산을 소유할 수 있음
- 생전신탁은 철회가능 유무에 따라서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과 철회불가능신탁(Irrevocable trust)으로 구분. 신탁의 철회 권한은 위탁자에 의해서만 유보되는 것이기에 철회가능 및 철회불가능 신탁의 구분은 생전신탁에 한해서만 존재함

*유언신탁의 경우 사망 후 신탁이 설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정이후 위탁자가 철회가능하지 않음

■ (QTIP) QTIP(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perty)은 생전신탁의 한 유형으로, 위탁자 사망과 동시에 설정자산으로부터의 수익 등을 현재 배우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배우자 사망 시 자산을 수익자(자녀 등)에게 배분하는 상품임

- 위탁자가 재혼을 한 경우 현 배우자의 여생을 위해 유산에 대한 수익을 제공, 현 배우자 사망이후 재혼 전 배우자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유산을 증여함. 현 배우자는 유산에 대한 권한은 없기에 수익자들이 증여받을 부분을 침해받지 않고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음
 - 예) 위탁자가 두 번의 결혼을 하였다면 첫 번째 배우자 A로 부터의 자녀를 자산 수익자로 설정하고, 위탁자 사망 시 일차적으로 유산으로부터의 수익을 두 번째 배우자 B로 설정함. 하지만, 이 경우 현재 배우자 B가 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 C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산에 대한 수익권만 현재 배우자 B에게 보장함. 이후 현재 배우자 B 사망 시 첫 번째 배우자 A의 자녀들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유산이 배분됨
 - QTIP의 특성상 설정된 신탁은 위탁자 사망 후 임의로 생존 배우자에 의해 철회가 불가능하기에 철회불가능신탁(Irrevocable trust)으로 분류됨
- QTIP은 위탁자 사망이후 위탁된 자산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후 수익자에게 상속 시 세금혜택은 중지됨

- **(유언신탁) 유언에 의해 설정되어 위탁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함. 수탁자에게 자산에 대한 관리와 함께 유언에 의해 지정된 수익자에게 유산배분에 대한 역할을 일임함**
 - 유언신탁은 일반적으로 유언(Will)의 한 항목으로 포함되며 유산에 대한 수탁자를 지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위탁자 사망 시 유언에 대한 검인과정을 수탁자가 대신하며, 검인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유언신탁은 효력을 가지게 됨
 - 유언신탁은 대개 특정 기간 동안 위탁자가 전문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며, 유언에서 지정된 특정시점이 도래할 경우 수익자에게 유산을 증여하고 계약을 종료함
 - 예)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위탁자는 유산을 관리하며 일정 부분을 교육비로 할당할 수 있고, 수익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잔여 유산을 증여받게 됨
- **(민간시장) 대형 금융회사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상속형 신탁으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상속관련 컨설팅을 제공**
 - (BOA) 2008년 US Trust 인수를 통해 상속관련 신탁업무를 강화하였으며 전문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
 - (Wells Fargo) 유언신탁뿐만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 연속신탁을 결합한 Legacy Trust 제공을 통해 상품 라인업 차별화
 - Legacy Trust: 자산상속이 한 세대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로까지 이어지도록 장기간 운용하는 신탁으로, 자산보호를 위해 해지가 불가능하며, 검인과정 및 재산세 면제의 혜택이 있음

2. 영국

-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사인간의 신탁거래는 주로 유산상속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수익자 범위 및 자산 및 수익에 대한 권한범위에 따라 대표적으로 기본신탁(Bare trust)과 수익신탁(Interest on possession)이 있음
 - (기본신탁) 신탁된 자산의 명의는 신탁자(Trustee)에게 있으나 자산과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권한은 수익자에게 귀속됨
 - 기본신탁의 경우 보통 위탁자의 자녀(수익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자가 자산을 관리함. 성인연령의 기준은 잉글랜드·웨일스는 18세 이상, 스코틀랜드는 16세 이상임
 - (상속세) 현재 자산의 명의는 신탁자에게 있으나, 자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수익자에게 귀속됨. 따라서 최대 7년간 위탁자가 생존 시, 이 기간 동안 상속세를 면제받음
 - (수익신탁) 신탁자는 유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비용 제외)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킴. 수익신탁의 경우 미국 QTIP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거주권 혹은 수익을 배우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배우자 사후에도 주거·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위탁자 사후, 유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거주권 포함)에 대한 권한은 배우자에게 있으나, 상속되는 원자산(Capital)에 대한 권한은 배우자가 아닌 자녀(혹은 타수익자)에게 있음
 - (상속세) 재산이 신탁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원금 혹은 원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이 배우자에게 증여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상속세가 면제됨. 배우자 사망이후 자녀에게 유산 상속 시 기본적인 상속세율이 적용됨
- (상속세) 영국은 기본적으로 £32.5만 이상의 유산에 대해서는 40%의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신탁방식과 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에 차이가 존재

- 상속세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뉨
 - ① 신탁으로 유산을 이전하였을 경우
 - ② 신탁설정 후 10년 주기 상속세(10-yearly Inheritance Tax)를 부과
 - ③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 신탁방식 이외에도 영국의 주택매각차용제도(Home reversion plan)은 65세 이상 자가소유자가 주택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차용전문 회사(reversion company)에 매각하여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분 매각 이후에도 자가주택에 거주가 가능함

- 지분 매각대금은 신청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연령,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매각대금은 높게 결정됨
 - 일반적으로 주택자산의 25~100%를 Bridgewater and Newlife 등의 주택 매각차용전문 회사에 매각한 후 받게 될 매각대금은 시가의 20~60% 수준에 결정되어 70세 이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예) 65세 부부의 경우 주택자산의 70%를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매각대금은 주택가격의 20% 수준임

- 매각대금의 수령방식은 일시금, 연금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일시금 수령 시 전액 비과세됨

- 가입자의 사망 또는 노인요양 시설입소 등 영구적으로 소유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 주택이 매각되는데 주택 지분의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각 대금의 지분비율 만큼을 상속자(또는 수익자)가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환매(Buy-back) 할 수 있음

- 주택매각차용제도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대가로 가입자는 별도의 주거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평생 거주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비과세됨. 그 밖에 주택매각차용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표 1] 주택매각차용제도(Home Reversion)의 장·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을 현금화하여 노후자금으로 이용이 가능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평생 거주가 가능 • 주택 지분 매각으로 인한 대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 • 일부 매각의 경우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향후 계약종료 시 주택처분액의 지분 비율만 유족이 상속받을 수 있음 • 이자비용 부담이 없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으로 분류되어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제도에서 제외될 가능성 있음 • 상속될 재산이 감소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 단독 집 소유주가 아님 • 계약 해지 시 지분을 현재 집값에 맞추어 되사게 되므로 집값이 상승 했을 경우엔 더 큰 금액을 지불 • 가입 후 조기 사망 시 계약초기 주택가격 대비 큰 손해를 볼 수 있음 • 담보주택에 대출기관의 동의 없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거주할 수 없음 • 주택의 감정평가 비용 등 제반비용 발생 • 주택화재 보험을 요구할 수 있음 • 주택을 현 상태로 보존할 것을 요구 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보수비용이 요구됨

3.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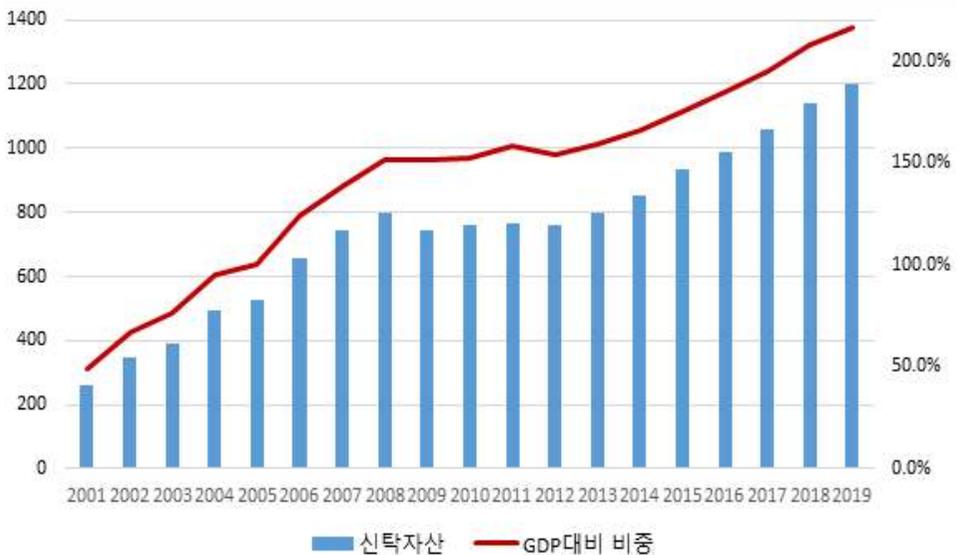
3.1 일본 신탁시장 개요

■ 일본 신탁시장은 고령화 심화와 더불어 급속하게 성장하며 GDP대비 신탁시장 규모가 2001년 49.4%에서 2019년 216.2%까지 증가함

- 1999년 9월 퇴직급여 신탁 도입을 기점으로 급성장 이후 2001년 10월 확정기여형 연금법, 2002년 4월 확정급여형 연금법이 시행되며 성장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었던 신탁시장은 2015년 상속·증여세법 개정 이후 성장세가 지속
- 반면 신탁 자산 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비금전형 신탁이 포괄신탁 증가에 기인하여 12년 59.9%에서 19년 62.4%로 증가함
- 포괄신탁이란 모든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용·처분해 주는 신탁으로, 타금융회사의 신탁을 다시 신탁하는 재신탁도 포함
- 개인신탁의 경우 자산 활용 목적에 따라 자산 승계·상속을 위한 신탁과 자산 형성·운용을 위한 신탁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자산 승계·상속을 위한 신탁으로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교육 자금 증여 신탁, 결혼·육아 지원 펀드, 생명 보험 신탁이 있음
- 금전 신탁, 투자 신탁, 연금 신탁, 재산 형성 펀드, 부동산 신탁은 자산 형성·운용을 위한 신탁으로 분류됨

[그림 4] 일본 신탁자산(단위:조엔) 추이 및 GDP대비 비중



주: 신탁자산은 매년 3월 기준, GDP는 매년 1분기 기준

자료: 일본신탁협회

3.2 고령층 대응 주요 신탁 상품

- 일본의 경우 고령화 문제와 경기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장려함. 이를 위해 해당 목적의 신탁에 대하여 비과세 조치를 취함
 - 일본 고령층은 주택 보유율이 90%를 상회하고, 전체 가계 금융자산 중 약 65%를 고령층이 보유하는 등 가계 자산이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신탁을 활용한 효율적인 자산관리 및 상속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큼
 - (조세 특별 조치법) 2021년 3월 31일까지 신탁 은행 등과 신탁 계약 체결 전에 한하여 교육자금 일괄 증여, 결혼·육아 지원 신탁 비과세 조치
 - 일반적으로 연간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10만엔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 교육자금, 결혼·출산·육아 관련한 비용을 수익자가 지불하고, 1년 이내에

[표 2] 일본 신탁 유형별 잔액 및 구성비

		2012년 9월		2019년 9월	
단위: 억엔		신탁잔액	구성비	신탁잔액	구성비
금전형 신탁	금전신탁	1,489,761	19.8%	1,644,308	13.5%
	연금신탁	339,592	4.5%	309,347	2.5%
	재산형성급부 신탁	405	0.0%	315	0.0%
	대부신탁	109	0.0%	-	
	투자신탁	1,054,571	14.0%	2,158,384	17.7%
	기타	134,638	1.8%	482,777	4.0%
	소계	3,020,064	40.1%	4,595,131	37.6%
비금전형 신탁	유가증권신탁	654,920	8.7%	616,620	5.0%
	금전채권신탁	295,924	3.9%	568,059	4.6%
	동산신탁	324	0.0%	810	0.0%
	부동산신탁	10,416	0.1%	13,653	0.1%
	부동산임차권신탁	28	0.0%	-	
	포괄신탁	3,554,760	47.2%	6,425,293	52.6%
	기타	47	0.0%	64	0.0%
	소계	4,516,423	59.9%	7,624,499	62.4%
합계		7,536,489	100	12,219,64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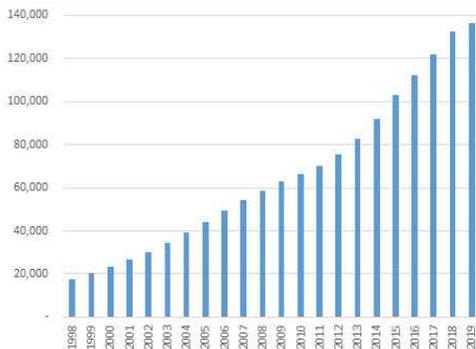
자료: 일본신탁협회

영수증을 신탁은행으로 제출 후 인출하거나, 자금 수령 후 다음해 3월 15일 까지 영수증을 제출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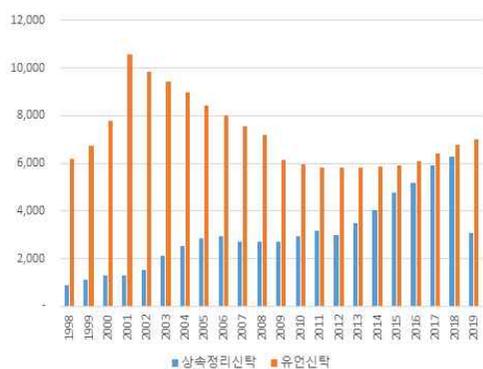
- (교육자금증여신탁) 2013년 이후 조부모가 손자에게 현금으로 교육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인당 1,500만엔(학교 이외 교육 자금의 경우 500만엔)까지 비과세 혜택
 - 위탁자는 수익자의 직계 존속으로 제한, 수익자는 전년 합계 소득 1,000만엔 이하로 신탁 계약 체결일 기준 30세 미만으로 한정
 - (결혼·육아지원신탁) 2015년 이후 조부모가 자녀 및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00만 엔(결혼 시 지출하는 자금은 300만엔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 위탁자는 수익자의 직계 존속으로 제한, 수익자는 합계 소득 1,000만 엔 이하로 신탁 계약 체결일 기준 20세 이상 50세 미만 자녀 및 손자로 한정
 -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자금을 수익자가 지불 후, 1년 이내 영수증을 신탁 은행으로 제출하고 인출 하거나, 자금 수령 후 다음해 3월 15일까지 영수증을 제출
- **상속수단으로 신탁 활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언신탁 뿐 아니라 유언 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림 5] 일본 고령화 관련 신탁현황(2019년도 9월 기준)

일본 유언대용 신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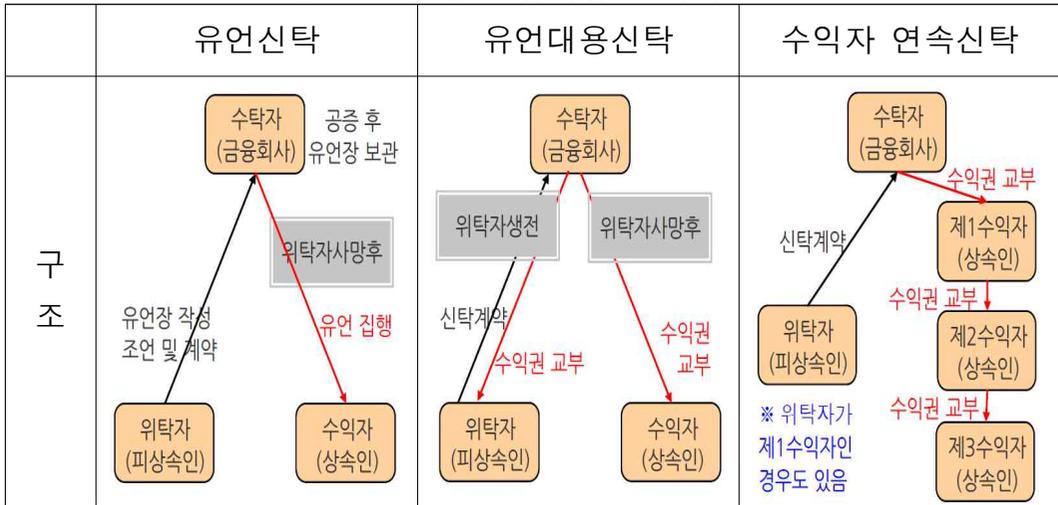
일본 유언신탁 및 상속정리 신탁



자료: 일본신탁협회

- 특히 전통적인 유언신탁보다 유언대용 신탁이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성장세도 빠름
- (유언신탁) 유언서상에 명시된 상속예정 재산을 수탁자(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토록 하고, 위탁자의 사망 시 유언서 내용대로 유증되도록 하는 신탁
 - 공정증서 유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유언장 관리가 가능하며, 신탁회사가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없음
- *공정증서: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
- (유언대용신탁) 위탁자 생전에 수탁자(금융회사)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
 - 위탁자 생존 시,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관리·수익하게 되며, 사망 시에는 신탁 계약상 정해진 바에 따라 재산을 승계시켜 유산을 둘러싼 분쟁을 감소시킴
 - 대다수 신탁은행은 원금 보장 유형의 유언대용신탁을 취급, 원금 보장의 경우 예금보험의 대상으로 1,000만 엔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
 - 유언 집행 없이 사망 통지와 동시에 승계자(수익자)가 신탁수익권을 취득, 상속세 측면에서는 이점이 없지만 즉시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
- (수익자연속신탁) 다수의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연속하는 형태의 신탁으로 수익자 사망 시에 당해 수익권이 소멸하고, 차순위자가 새로이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익권이 귀속됨
 - 위탁자가 처음 자신을 수익자로 하고 사망 시 아내를 수익자로 한 후, 아내 사망 후에는 위탁자의 장남을 수익자로 하는 등 연속 신탁이 가능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사주 승계 대상을 지정하여, 경영 공백 없이 사업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
 -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수익자의 범위는 기간제한이 있으며, 새로운 수익자 발생 시마다 상속세 부과 및 유류분 침해 우려

[그림 6] 일본 상속형 신탁의 구조



자료: 황원경(2014)

■ 일본 민간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신탁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신탁 수익권 담보 용자 상품을 응용하여 역모기지 공급의 경우 신탁형 상품을 주로 취급함

- 스미토모 미즈이 신탁은행, 군마은행, 세이부신킨은행은 역모기지 상품을 신탁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쿄 스타 은행은 신탁형 옵션을 제공함
- 부동산 담보 신탁은 신탁기관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탁등기하고 수익권 증서를 발급하여, 고객이 이를 대출기관에 제공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 받는 신탁
 - 저당권과 달리 피담보대출 양수 가능, 저당권은 경매를 통해 담보권을 처분하나 수탁자가 직접 공매처리에 의해 신속하게 담보처분이 가능함
- 신탁형 역모기지와 유언대용 신탁을 연계하는 상품 설계, 수익자에 배우자를 포함한 경우 가입자 사망 후 승계가 용이함

4. 기타

- **홍콩과 싱가포르는 신탁방식 대신 역모기지 형태의 상품을 운영 중이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음**
 - (홍콩) 주택연금 가입 시 복수의 가입자(최대 3명) 설정가능하며 가입자가 늘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구조임. 따라서 가입자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생존한 가입자는 월지급금과 거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음
 - 가입자를 최대 3명 이상 두는 것은 가입자와 배우자에 관한 거주 및 수급권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여명 연장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이 함께 노인층에 속하게 되는 노노(老老)시대에 대비하여 노인이 된 자식의 유류분까지 고려하는 제도임
 -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임대권을 매각해 현금화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입자 사망 시 지정한 자에게 승계 가능
 - LBS(Lease Buyback Scheme)은 공공주택의 남은 임대기간을 국가에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중앙적립기금제도(CPF)에 적립하는 방식. 가입자 사망 후 CPF의 적립금은 지정된 자의 CPF 계정으로 이체됨
 - ▶ 중앙적립기금제도(CPF):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일반 국민의 노후생활은 각자의 저축을 통해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공적 부조를 최소화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
- **앞서 살펴본 국가들은 기본적인 신탁상품은 자녀에게 증여할 자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배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자녀에 우선하여 유산의 수급권과 주택의 거주권을 신탁을 통해 보장함**
 - 현재 국내 공적연금은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을 바탕으로 배우자 혹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함

- ▶ (유족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유족은 수급자가 받던 기본연금액의 일정비율(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 (분할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하지만, 담보권 설정방식의 주택연금은 상속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해 배우자에 자연스럽게 수급권과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에, 신탁형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III. 신탁형 주택연금

1. 신탁의 정의 및 분류¹⁾

- (정의) 재산권을 가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를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운영하도록 하는 삼자 간 법률관계를 기반으로 한 제도
 -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신탁된 재산을 관리·운영하고 창출된 이익을 사전에 지정된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형태
- (장점) 신탁은 안전한 재산 보존 기능뿐만 아니라 저금리·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음
 - 미리 신탁을 설정함으로써 치매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금융사기 등으로 자금이 유용되는 사례 및 비정상적인 인출을 방지할 수 있음

1) 부동산 신탁의 자세한 분류는 <부록 1>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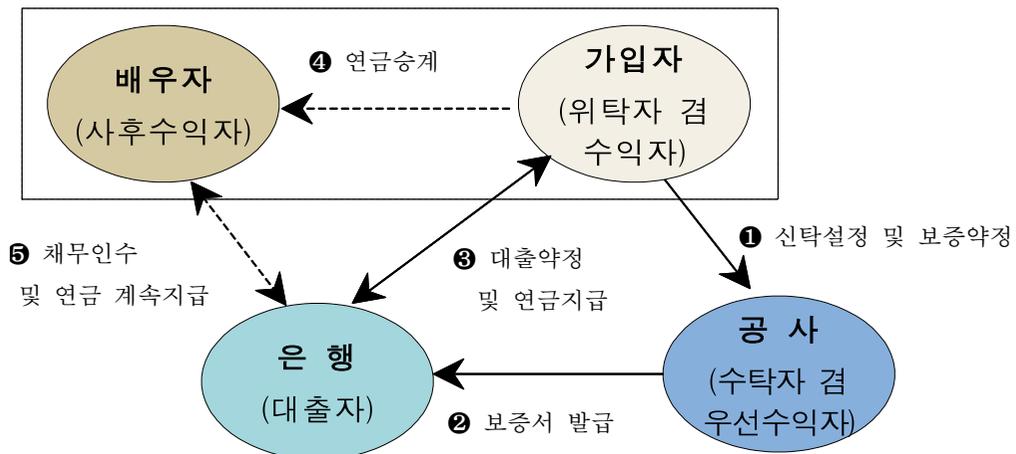
- 자산형성 및 운용이 중요해지고 있는 초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노년층은 신탁을 통해 건전하게 자산을 운용·관리할 수 있음
- 수탁자가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을 집행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가족 간의 상속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 정부도 고령화 시대 효율적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준비 중임
 - 수탁재산의 범위를 금전·부동산 등 ‘적극재산’에서 부채 성격 자산인 ‘소극재산’과 담보권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
 - 중장기적으로 신탁업법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음
- **(분류) 신탁재산을 중심으로 신탁을 분류하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재산신탁은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으로 분류되고 있음**
 - 퇴직연금의 경우 위탁자(근로자)의 금전(퇴직연금자산)을 수탁자(금융기관)에 신탁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금전을 운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므로 금전신탁 중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함
 - 신탁형 주택연금은 주택이라는 부동산자산을 신탁한 후 이를 담보로 수익금을 받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신탁이자 담보신탁에 해당함
 - 부동산신탁은 신탁회사에서 수탁 받은 부동산을 관리·개발·처분한 후 발생한 수익 또는 잔존부동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제도
 - 신탁의 목적 및 관리방법에 따라 개발(토지)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담보신탁으로 구분하고 있음

2. 신탁형 주택연금의 구조

- (신탁관계) 주택연금 가입자(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탁자(우선수익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의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주택연금대출을 보증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사후수익자)에게만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므로, 배우자가 연금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음
 -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후에는 수탁자(우선수익자)가 은행에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신탁주택을 공매하여 구상채권을 회수
 - 상속인(귀속권리자)이 대출채무를 변제할 경우 신탁주택 소유권을 해당 상속인에게 반환하고, 미변제 시 환가처분 후 잔여금원을 교부
 -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연금보증이 해지된 경우 신탁이 종료되며, 중도해지 시 신탁주택은 위탁자에게 반환
- (수익권) 가입자(수익자)는 신탁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취하고, 수탁자(우선수익자)는 수익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구상채권을 최우선 회수

*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수익자가 교부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

[그림 7] 신탁방식 주택연금 구조도



[표 3] 주체별 수익권

구분	내용	해당 여부	주체
수익권	① 수탁자로부터 보증서 발급	①②③	주택연금 가입자
	② 주택을 점유하면서 계속 사용	①②③	배우자
	③ 신탁재산 처분 후 남은 금원을 취득	③	상속인
우선수익권	수익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 으로부터 최우선으로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수탁자

- 가입자는 신탁주택을 사실상 점유·사용(임대 및 임대수익 수취 포함) 하고, 신탁주택에 대한 유지·수선 등 실질적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 신탁된 이후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 보전처분이 불가능하며, 위탁자의 개인회생 시에도 주택연금수급은 가능

3. 신탁형 주택연금의 역할

3.1 이용자 측면

- (수급안정성 강화) 주택 소유자(가입자) 사망 후 자녀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 승계하여 거주권(중신 거주를 통한 주거안정) 및 수급권(연금 중신 지급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유지할 수 있음
- 기존 근저당권 방식의 경우, 가입자 사망 후 상속분쟁으로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으나 신탁방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음
- (소비진작효과) 빈집·빈방 등과 같은 유휴공간을 임대차 등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소득 창출을 통해 고령층의 소비진작효과를 달성

[표 4] 신탁방식 비용절감 효과분석

(단위 : 천원, 70세 & 주택가격 3억원(85㎡) 기준)

구분		저당권	신탁	비고
가입	등록면허세	600	6	신탁등기 필지당 6천원
	지방교육세	120	1	등록면허세의 20%
승계	국민주택채권할인금액	378	-	소유권 이전 시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율 3%로 환산)
	법무사 수수료	385	70	소유권 이전등기 385천원 신탁원부변경등기 70천원

- 기존 근저당권 방식의 경우, 사실상 임대차가 어려워 빈방 등 유휴공간이 있더라도 방치하는 비효율이 발생했으나, 신탁방식에서는 임대차가 가능해짐
- 가입자가 임차인을 선정하고, 수탁자가 주택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승인하여 임대료는 가입자가 수취하고 임대보증금은 신탁 재산으로 수탁자가 관리하되, 운용수익은 수익자인 가입자에게 지급
- 가입자 주거 외 공간에 대한 활용이 문제되었던 다가구 주택에 대해 임대차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비용절감) 근저당권 방식에 비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음

3.2 공적측면

■ (공공임대주택 활용) 가입자의 주택을 활용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

- (주택연금 이용주택) 요건충족 시 주택을 임대하거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과 일부공간을 공유(House sharing)할 수 있도록 지원
- (주택연금 종료주택) 신탁주택의 공공임대주택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자기취득(유입) 허용하여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게 임대

[표 5] 경·공매 낙찰가율 비교

구분	온비드 (이용기관 물건*)			법원 경매		
	부동산 경매	주거용 건물	아파트	부동산 전체	주거용 건물	아파트
2014	114.14	107.23	107.86	70.40	85.68	85.70
2015	114.21	112.23	112.68	72.50	85.78	89.90
2016	115.01	108.78	108.92	72.40	87.19	89.80
2017	110.48	103.99	105.04	74.40	87.98	91.40
2018.6	105.26	96.07	97.40	74.10	84.71	88.10

* 온비드 이용기관 공매물건 기준

** 주택연금 경매건의 평균 낙찰가율은 95.6%(’17년말 기준)

- 신탁주택 공매 시 주택경기 침체로 저가 낙찰에 따라 구상채권 회수에 지장이 있을 경우, 임대에 적합한 주택은 수탁자가 직접 취득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중계
- (시장조정기능) 주택시장에 매매·전월세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가격교란이 발생할 때, 재고주택을 활용하여 국지적 가격조정기능으로 활용기대
 - 주택가격과 임대료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매매·전월세 물량을 조절하여 시장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주택시장의 자동안정화(Automatic stabilizer) 역할을 수행가능
- (구상채권 회수금액 증가) 법원 경매에 비해 공매 방식의 낙찰가율이 평균적으로 높아 회수가능금액 증가
 - 공매방식의 낙찰가율뿐만 아니라 신탁방식은 수탁자가 주택소유자이므로 담보주택의 소액임대차에 따른 손실발생 위험축소로 회수가능금액 증가
- (비용절감) 담보주택을 공매 처분함에 따라 경매에 비해 주택가격 3억원 기준 약 300만원 절감 예상

[표 6] 근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비교

구분	근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담보권 설정방식	근저당권	신탁등기(소유권 이전)
선순위 소액임대차	배제불가능	신탁 후 배제가능
채권실행방법	법원 경매	수탁자 공매
채권실행절차 및 소요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 복잡 장기간 소요(약 13개월) 폐쇄시장에서의 경매 처분가격 및 절차의 경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 간편 단기간 소요(최단 30일 내외) 일반공개시장에서의 공매 처분가격 및 절차의 융통성

- 기존 근저당권 방식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 상속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 경매 지연에 따른 손실부담이 있었으나, 신탁방식은 공매 처분 후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교부하므로 위험부담 축소

IV. 결론 및 시사점

- 주택연금의 도입은 은퇴이후 안정적인 소득과 거주권을 함께 보장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 및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야기되는 근저당권 방식의 한계점을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로 이혼과 재혼의 발생이 증가하여 상속분쟁이 늘고 있어 근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수급권과 거주권을 보장하기 힘든 단점이 있음

■ **이에 보다 탄력적인 주택연금 제도 운용을 위해 신탁형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미국·영국·일본의 신탁 활용 사례를 살펴봄**

- 미국과 영국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관습법에 의거하였으며, 주로 유산상속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음
 - 영미권의 신탁은 명시된 상품구조를 띄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에 의해 추가조항을 신탁계약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발전함. 따라서 유산상속의 경우 위탁자의 환경에 따라 자산·수익의 배분 및 시점 등 신탁계약의 차이가 있음
- 일본은 고령화 문제와 장기화된 경기부진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하여, 신탁시장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함
 - 특히 가계 자산이 고령층에 집중되자 자녀 세대 자산 이전 장려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을 통한 증여형 신탁을 장려함

■ **(시사점 1) 미국의 QTIP은 생존배우자의 수급권과 거주권을 보장함은 물론, 생존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및 수익권 분쟁에 대비한 상품임. 따라서 신탁형 주택연금 또한 수익자와 수익의 범위를 상황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혼과 재혼이 빈번한 미국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탁을 통해 자녀의 자산에 대한 권리는 미리 설정하는 대신, 자산에 대한 수익만을 배우자의 수급권과 거주권을 위해 보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존재
- 한국도 기대여명의 증가 및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이혼과 재혼이 예전에 비해 많이 일어나고 있기에, 재혼에 따른 배우자 및 (이전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권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택연금의 경우 담보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일 경우에도 피보증인(채무자)은 한 명이고 그 배우자는 연대보증인이므로 이혼 시 분할지급은 불가능한 상황임

- 주택연금도 신탁계약 설정 시 부부간 이혼에 대비한 배우자 수익자 지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2) 영국의 주택매각차용제도(Home Reversion Plan)은 지분 매각방식으로 이자 및 보증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 비용절감차원에서 장점이 있기에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는 LH 연금형 희망나눔주택과 같이 매각방식의 주택자산을 활용한 노후소득마련 옵션이 존재하나 거주권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
 - 이를 참고하여 주택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이를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되 가입자의 거주권을 보장하여 향후 계약종료 시 가입자에게 환매(Buy-back) 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3) 일본의 경우 은행들의 신탁사업 영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특히 신탁형 역모기지 상품을 일찍부터 도입함
 -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신탁은 고령층 자산 운용의 핵심적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어, 역모기지 시장은 한국보다 비활성화 되어 있지만 대다수 상품이 신탁형 구조임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고령층 신탁 상품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신탁형 역모기지 수용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도적 개선점등을 잘 전달하여 고령층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시사점 4) 홍콩과 같이 한국도 향후 기대여명의 증가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고령층에 편입되는 가정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에, 생존배우자 뿐만 아니라 노인이 된 생존자녀에 대한 수급권과 거주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주택연금은 담보권 설정이라는 형식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여러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하지만 신탁형식이라는 보다 유연한 계약형태 도입에 따라 고령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홍콩과 같이 복수의 가입자(최대 3명)를 허용하여, 가입자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생존 배우자 혹은 자녀는 월지급금과 거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음
- (시사점 5) 공적연금의 경우 배우자 사망 외에 이혼사유 발생 시에도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분할연금을 제공. 주택연금도 부부간 이혼사유 발생 시 분할연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주택연금의 경우 담보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일 경우에도 피보증인(채무자)은 한 명이고 그 배우자는 연대보증인이므로 분할지급은 불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대출방식 이외에 영국의 주택매각차용제도와 같은 주택연금의 지분매각방식 등 분할지급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부록 1> 부동산 신탁의 종류

- (개발(토지)신탁) 개발(토지)신탁은 개발 노하우가 없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토지를 신탁하는 상품
 - 신탁회사는 자금을 조달하여 택지를 조성하거나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환원
- (담보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자금용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후,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 저당권 설정방식과 비교하여 소유자가 부담하는 제 비용이 저렴하며 신탁기간 중 예기치 않은 제3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경매 방식이 아닌 공매를 통하여 담보물을 처분하므로 저가 경락이 방지되는 장점이 있음

[부도 1] 신탁유형



- (관리신탁) 부동산의 직접 관리가 어렵거나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부동산권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거나 소유권의 명의를 관리하는 신탁
- (처분신탁) 부동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매수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이를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제도
- (분양관리신탁) 복잡한 상가분양 및 관리를 체계화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 등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제도

<부록 2> 국내 공적 및 사적연금의 수급권 제도

- 주택연금보다 먼저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출범한 공·사적연금은 수급자 사망 또는 이혼 시 배우자 연금수급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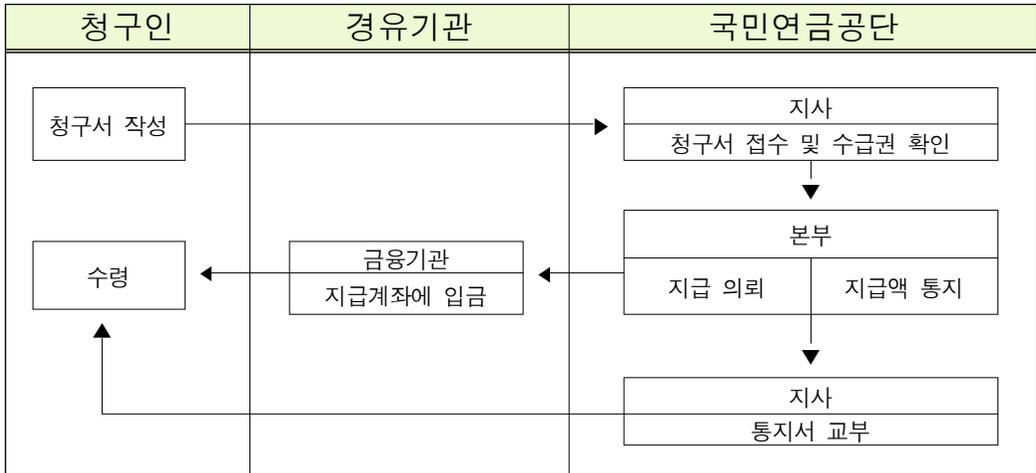
1. 공적연금

-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4대 연금이 존재하며, 이 중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직역연금은 그 체계가 공무원연금과 유사하므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가. 국민연금

- (유족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유족은 수급자가 받던 기본연금액의 일정비율(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여기서 일정한 가입기간이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성립하며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재혼 시 수급자격이 상실됨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사망일 기준 보험료 납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대상기간(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1/3 이상인 경우
 - 사망일 기준 최근 5년간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유족은 필수서류(청구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계좌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별도의 유족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음의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부도 2]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과정



-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은 10년 단위로 기본연금액에 차별을 두며 부양가족연금액과 합산하여 [표 1]에 따라 지급함
 - (기본연금액) 가입자 개인의 총 가입 기간 · 생애평균 소득 수 ·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수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의미. 즉, 급여산식에서 정한 연금액을 의미
 - (부양가족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존재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서, 2020년 1월 현재 배우자 연 261,760원(월 21,810원), 자녀 또는 직계존속은 1인당 174,460원(월 14,530원) 지급
 - 다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는 반면,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에 사망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수령함

[부표1]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별 유족연금액

가입기간	급여수준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유족연금은 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 **(분할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 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분할연금의 수급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단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先) 청구가 가능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 5년 이내 청구할 경우

[부표 2]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2 년	1953~ 1956년	1957~ 1960년	1961~ 1964년	1965~ 1968년	1969년 ~
수급개시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원칙적으로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 단,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 취득자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 예)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의 노령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이 60만 원일 때,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배우자는 30만원을 분할하여 생일에 도달한 다음 달 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

나. 공무원연금

■ **(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

금수급자 또는 장애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유족에게 매월 수급자가 받던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함

- 수급기간 3년 이내 조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과 별도로 유족연금 특별부가금이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수급권이 상실되며 배우자와 유족이 동일한 직역연금 가입자 인 경우(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배우자 사망 시 받게 될 유족연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함
- (분할연금) 공무원연금에서도 분할연금제도가 있으며 그 수급요건은 국민연금과 동일함. 다만,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조건 충족 시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연금수급권자가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받게 되는 일시금도 분할대상에 해당

2. 사적연금

- 사적연금은 소득세법상 급여수령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세제적격의 연금계좌와 과세가 이연되지 않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이 존재하며, 연금계좌는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구성됨
-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 전 사망 시 배우자는 계좌를 해지하여 상속하거나 승계할 수 있음
 - 계좌를 해지할 경우 배우자는 소득세(연금 또는 퇴직) 및 상속세를 공제한 후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음
 - 계좌를 승계할 경우 승계대상은 배우자로 한정되며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계좌승계를 신청하면 5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
- 연금수령 중 사망할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 선택한 수령방식에 따라 배우자의 연금 수급여건이 상이

- 일반적인 연금지급 상품의 수령방식은 확정기간형 또는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음
- 확정기간형은 가입자 생사와 관계없이 확정기간(주로 10, 20, 30년 등)에 지급되므로 배우자 사망 시점이 확정기간 이내일 경우 잔여기간 배우자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종신형의 경우 생존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나 생사와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보증기간이 존재하므로 (보증기간은 주로 10년, 20년, 30년, 기대여명, 100세 보증 등) 보증기간 내 사망 시 배우자는 잔여 보증기간 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참 고 문 헌

1. 백인걸 · 최경진, 2020, 주택연금의 소득보장 및 소비진작효과 분석
2. 서정호, 2019, 상속형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금융연구원
3. 여밀립, 2019, 일본의 고령화사회와 금융서비스 사례, 자본시장포커스
4. 임혜순, 2012, 일본의 개정 신탁법제 시행과 신탁비즈니스
5. 최동식(2006), 신탁법, 법문사
6. 황원경, 2014, 상속형 신탁의 이해와 최근 이슈,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7. Toshiro Kojima, How to make reverse mortgage more common in Japan, Nomura Journal of Capital Markets Spring 2013 vol.4. No.4
8. Robert L. Mennell & Sherri L. Burr, 미국신탁법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9. 일본 신탁협회, www.shintaku-kyokai.or.jp